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도이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도이치자산운용(주)
3. 작 성 기 준 일 : 2013 년 9 월 3 일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 년 9월 6일
5.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6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8.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7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7
3. 모집(판매)예정금액 7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7
5. 인수에 관한 사항 7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7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8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8
4. 집합투자업자 8
5. 운용전문인력 8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9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7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9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3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7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9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3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5

1. 재무정보 3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9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1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43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3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4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5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5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5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9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0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3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55

[붙임] 용어풀이 57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A1425)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A1426	A1427	A1428	A1429	A1430	A1431	A1432	A143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판매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판매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A1425)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A1426	A1427	A1428	A1429	A1430	A1431	A1432	A143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비고
2011.05.27	최초 설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 영풍빌딩 19 층 (대표전화:02-724-7400)

주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1)책임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13 년 6 월 23 일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억좌)	
이정원	1974	부장	18	3,130	도이치자산운용 운용팀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3)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운용 규모**

: 해당사항 없음

(2)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이정원	2011.05.27 (설정일) -현재

(주 1) 작성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종류형, 추가형, 개방형

나.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DWS 독일 주식 펀드 (DWS Deutschland)**"(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DWS 독일 주식 펀드 (DWS Deutschland)"는 독일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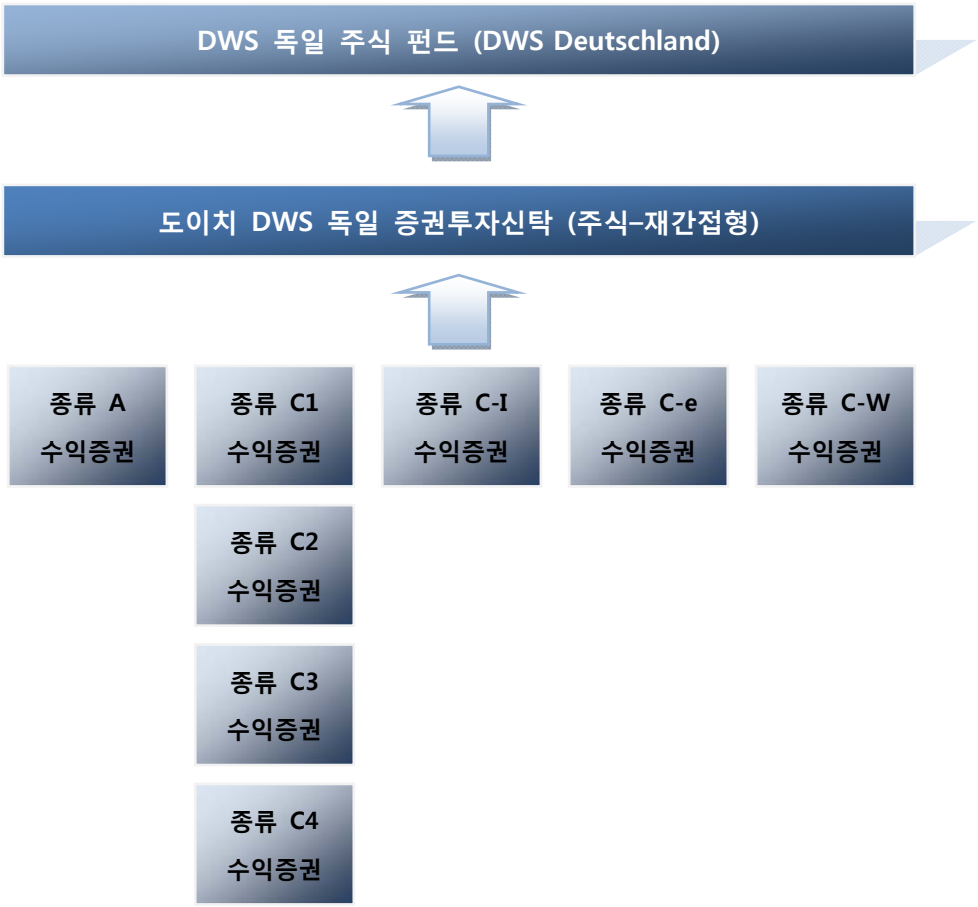

***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및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다.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지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A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가입자격		가입자격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주 5)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자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
구분		**부과비율 (연간,%)**			
최초설정일		2011.05.27	설정 전	2011.05.27	설정 전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내	-	-	-
	후취 판매수수료	-	-	-	-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징구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징구		
투자 신탁 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	0.300	0.300	0.300
	판매회사보수	0.900	0.030	0.920	0.000
	신탁업자보수	0.040	0.040	0.04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	0.020	0.020	0.020
	총보수	1.260	0.390	1.280	0.360

집합투자기구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가입자격		가입자격제한 없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된 자
구분		**부과비율 (연간,%)**			
최초설정일		2013.05.20	설정 전	설정 전	설정 전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	-	-	-
	후취 판매수수료	-	-	-	-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징구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	0.300	0.300	0.300
	판매회사보수	1.500	1.250	0.990	0.950
	신탁업자보수	0.040	0.040	0.04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	0.020	0.020	0.020
	총보수	1.860	1.610	1.350	1.310

주 1) 판매수수료 (판매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는 매입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 2) 보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하며, 매 3 개월마다 지급합니다.

주 3)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 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 25 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단, 전환 후 추가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 매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주 5) 종류C-I 의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펀드명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
운용회사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Investment GmbH (구. DWS Investment GmbH ; 합병에 의하여, 2013 년 9 월 1 일자로 해당 운용회사의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초설정일	1993 년 10 월 20 일
펀드규모	3,216.3 EUR Million (2013.05.31 기준)(약 4.7 조원)
비교지수	CDAX
펀드설립지역 및 준거법	독일 /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는 독일투자법(German Investment Act (이하 "InvG")에 따른 Directive(지침)에 기초하여 설립된 펀드입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독일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의 투자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자산의 최소 51% 이상은 반드시 독일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된 투자대상은 블루칩 및 중소형주에 광범위하게 투자합니다. 2. 펀드 자산의 20%를 초과하여 독일연방공화국 통화 외의 기타 통화로 표시된 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3. 펀드 자산의 최대 20%까지 채무증서대출을포함한, 이자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및 워런트연계채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펀드자산의 최대 49%가지는 단기금융상품 및 은행예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펀드자산의 10%까지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펀드자산의 5%를 초과하는 비중은 단기금융상품(MMF)에만 투자합니다.
투자위험	펀드가 신탁자산 내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자본이득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자산의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당일 환매 하였을 경우에, 투자한 부분만큼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투자목적은 투자자산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에 있으나, 그 같은 자본이득이 반드시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투자한 부분에 제한됩니다.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추후 지불하여야만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운용역	**Tim Albrecht** I Director 독일주식 및 글로벌 산업재 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 2000년 9월 도이치 그룹 입사 University of Wuerzburg 석사 자본재에 대한 글로벌 섹터 및 리서치 헤드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가격 상승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집합투자증권	60%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에 투자하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자산유동화채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7) 금리스왑거래		
8) 환매조건부매도		
9) 투자신탁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적용예외)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1)내지 4)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1)내지 4)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집합투자증권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수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가목 및 나목은 최초 설정일 로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격변동 등은 3 개월까지 (집합투자규약 20 조 2 항의 사유)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상기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이상을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이 집합투자증권만을 포함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만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채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최초 설정일 로부터 1 개월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 로부터 1 개월 가격변동 등은 3 개월까지 (집합투자규약 20 조 2 항의 사유)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계열회사발행주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독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증권투자신탁으로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에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또한,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율위험을 일정부분 헷지(Hedge)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줄일 방침입니다. 본 상품은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상품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CDAX 95% + 콜금리 5%

이 집합투자기구는 독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만큼,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의 비교지수인 CDAX 가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의 비교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CDAX:** 독일증권거래소(Deutsche Borse)에서 제공하는 독일내 주식 전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2)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의 주된 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90% 이상**이지만,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 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헤지 수단 및 비용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그 거래의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3) 기타 환헤지 관련 주의 사항

환헤지란,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환 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환차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헤지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환헤지를 수행하여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독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 상승시 자본이득을 추구

***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의 가격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품가입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인 외국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DWS Deutschland)에 주로 투자하므로 피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인 독일 주식 등의 가격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 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의 주된 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90% 이상**이지만,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 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헤지 수단 및 비용**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그 거래의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3) 기타 환헤지 관련 주의 사항** 환헤지란,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환 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환차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헤지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환헤지를 수행하여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국가 등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해외자산 투자관련 가격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자산과 관련, 발행자, 자산보관 및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기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해당자산의 가격 및 수량 등 기준가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잘못 또는 지연하여 공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사유들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 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주로 해외에 상장·등록 또는 거래되는 유가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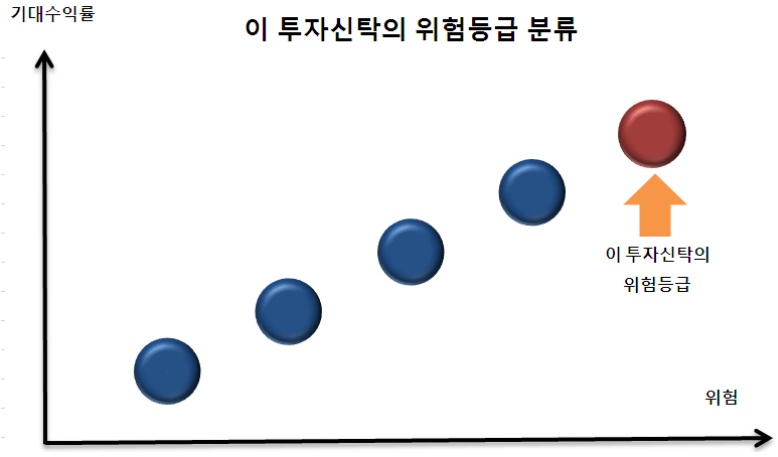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구조화된 파생상품투자신탁(원금보존형 포함)
2 등급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3 등급	중간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4 등급	낮은 위험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 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 A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
2. 종류 C1 수익증권: 제한없음
3.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된 자
4.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된 자
5.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된 자
6. 종류 C-I 수익증권: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7.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8. 종류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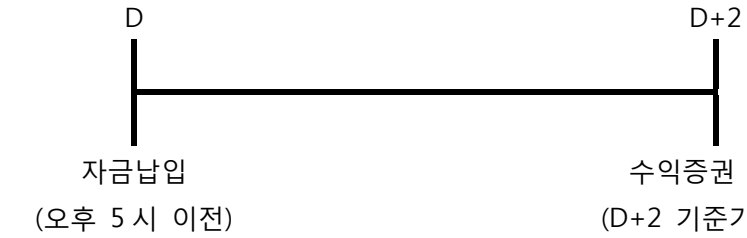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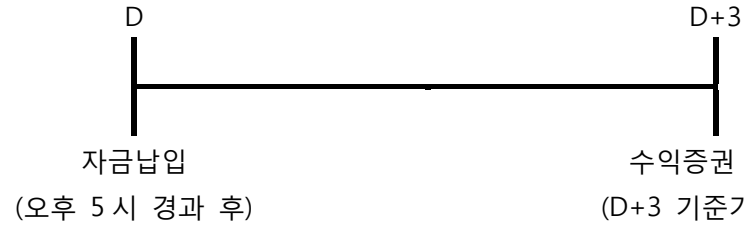

(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이하 "평가시점"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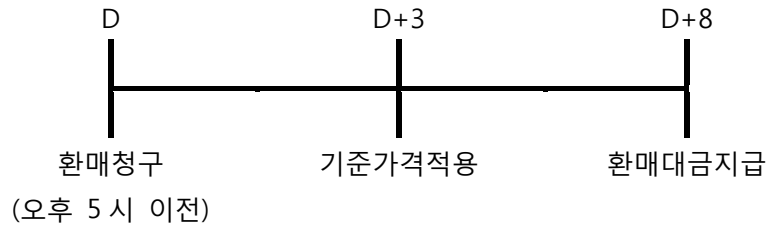

(나) 오후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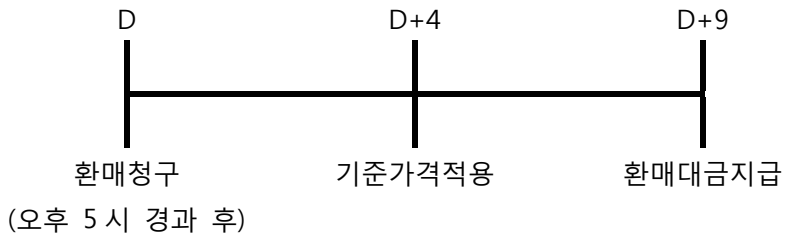

(다)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 (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 (연간, %)								비고 (지급시기)
	A	C1	C2	C3	C4	C-I	C-e	C-W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환매시

주 1) 이익금: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빈번한 환매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류형 A 의 경우 30 일미만 환매를 고려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이익금의 10%가, 종류형 C1, C2, C3, C4, C-I, C-e 및 C-W 의 경우 90 일미만 환매를 고려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이익금의 70%가 환매수수료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회사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 영업일전일(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및 종류 C3 수익증권의 잔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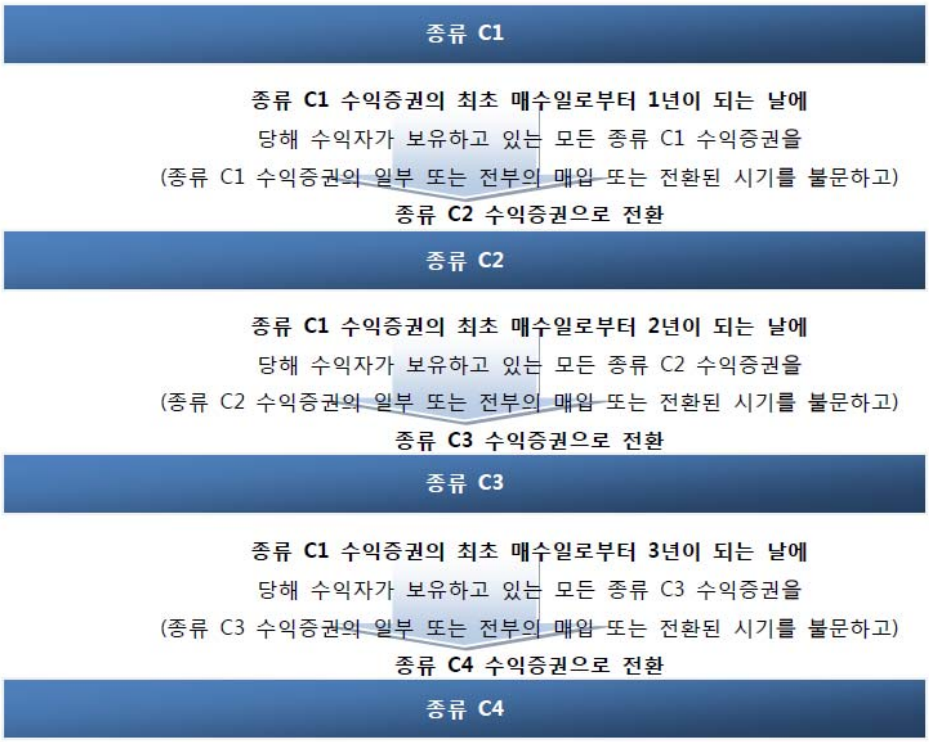

(2) 수익증권의 전환 처리 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 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만약 전환일("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언급된 1 년, 2 년, 3 년이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전환일로 봅니다.

2)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날의 17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수익증권의 전환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전환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 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 매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4)"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만약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될 수 있습니다.

5)판매회사는"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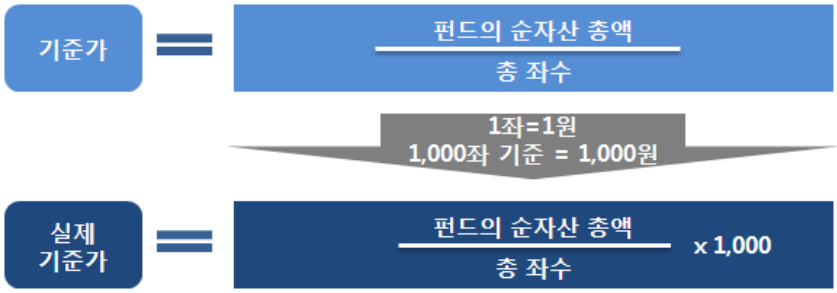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일에 제공받아 사용가능한 다음 평가금액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장외 파생상품의 발행주체가 제공하는 공정가격 ② KIS채권평가에서 제공하는 가격 ③ 장외파생상품의 실제환매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 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주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주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평가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1년에 한번 또는 관련규정에 변화가 있을 경우 검토 후 승인.
- 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사안들을 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
- 비유동성 자산, 장기간 시세가 형성되지 않는 가격, 평가방법변경과 같은 집합투자재산 특정 사안들에 대해 검토 후 승인.
- 유동성, 발행사 위험 요인에 기초해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조정.
- 가격누락, 장기간 시세가 형성되지 않는 가격, 시세변동이 큰 가격, 가격변동 허용범위 검토, 거래가격과 평가가격의 비교 등과 같은 예외사항들에 대한 감독을 제공할 MIS보고서 검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A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가입자격		가입자격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주 2)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자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
구분	**부과 시기**	**부과비율 (연간,%)**			
선취판매 수수료	매입시	납입금액의 1.00% 이내	-	-	-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시	-	-	-	-
전환 수수료	전환시	-	-	-	-
환매 수수료	환매시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징구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징구		

집합투자기구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가입자격		가입자격제한 없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된 자
구분	**부과 시기**	**부과비율 (연간,%)**			
선취판매 수수료	매입시	-	-	-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시	-	-	-	
전환 수수료	전환시	-	-	-	
환매 수수료	환매시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징구			

주 1) 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 2) 종류C-I 의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기구		종류 A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가입자격		가입자격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주 6)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자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
구분	**부과시기**	**부과비율 (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0.3000	0.3000	0.3000	0.3000
판매회사보수		0.9000	0.0300	0.9200	0.0000
신탁업자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0.0001	-	0.0000	-
총보수·비용	-	1.2601	0.3900	1.2800	0.3600
합성 총보수·비용	-	1.2601	1.1900	1.2800	1.1600
증권 거래비용	사유발생시	-	-	-	-

+

집합투자기구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가입자격		가입자격제한없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된 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된 자
구분	**부과시기**	**부과비율 (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0.3000	0.300	0.300	0.300
판매회사보수		1.5000	1.250	0.990	0.950
신탁업자보수		0.0400	0.040	0.040	0.04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0.020	0.020	0.020

기타비용	사유 발생시	0.0000	-	-	-
총보수・비용	-	1.8600	1.610	1.350	1.310
합성 총보수・비용	-	1.8600	2.410	2.150	2.110
증권 거래비용	사유 발생시	-	-	-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5.27 ~ 2013.05.26]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 이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5.27 ~ 2013.05.26]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DWS 독일 주식 펀드(DWS Deutschland))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0.80%(집합투자업자보수(연0.6%),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및 기타비용 포함)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수익증권 설정 후 발생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종류C-I 의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가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형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1	746	1,247	2,736
종류형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3	775	1,288	2,813
종류형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2	385	674	1,534
종류형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3	672	1,178	2,682
종류형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	375	657	1,496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됨을 가정하여 예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영)"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해외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 한도 (14%)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원천 징수세액의 환급 금액은 한국 및 투자대상국가의 조세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 질 수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적용 시한이 2009 년 12 월 31 일로 만료되어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실이 과세됩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수익증권의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 이익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등은 원천징수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본 투자신탁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 및 규정, 정부 정책, 본 투자신탁 및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본 투자신탁 및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의 차이

기준가격: 투자신탁(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 기(2012.05.27 - 2013.05.2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 기(2011.05.27 - 2012.05.2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기 (2013.05.26)	제 1기 (2012.05.26)
운용자산	217,121,877	140,906,903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기 (2012.05.27 - 2013.05.26)	제 1기 (2011.05.27 - 2012.05.26)
운용수익	31,038,533	-646,119

증권	188,574,175	115,693,872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28,547,702	25,213,031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135,929	15,017,133
자산총계	217,257,806	155,924,036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12,929,748	30,791,831
부채총계	12,929,748	30,791,831
원본	166,936,504	137,713,827
수익조정금	22,823,999	-9,951,705
이익잉여금	14,567,555	-2,629,917
자본총계	204,328,058	125,132,205

이자수익	238,396	387,044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차익(손)	30,800,137	-1,033,163
기타수익	3,734	0
운용비용	1,211,656	1,946,304
관련회사 보수	1,211,656	1,946,304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21,664	37,494
당기순이익	29,808,947	-2,629,917
매매회전율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 목	제2기(2013.05.26) 금액		제1기(2012.05.26) 금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8,547,702		25,213,0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28,547,702		25,213,031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88,574,175		115,693,872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88,574,175		115,693,872	
4. 기타유가증권	0		0	
파생상품		0		0
1. 파생상품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35,929		15,017,13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7,922		21,999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4,939,341	
6. 기타자산	98,007		55,793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17,257,806		155,924,036
부 채				
운 용 부 채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2,929,748		30,791,83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0,211,60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9,839,133	
4. 수수료미지급금	336,708		401,839	
5. 기타미지급금	2,378,980		544,479	
6. 기타부채	2,460		6,380	
부 채 총 계		12,929,748		30,791,831
자 본				
1. 원 본	166,936,504		137,713,827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37,391,554		-12,581,622	
(발행좌수 당기: 166,936,504 좌	이익잉여금	14,567,555		-2,629,917
전기: 137,713,827 좌	수익조정금	22,823,999		-9,951,705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920.65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204,328,058		125,132,20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17,257,806		155,924,036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2기(2012.05.27-2013.05.26) 금 액		제1기(2011.05.27-2012.05.26)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42,130		387,044
1. 이 자 수 익	238,396		387,044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3,734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2,166,082		1,352,455,349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22,068,669		1,348,748,481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30,097,413		3,706,86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1,365,945		1,353,488,512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21,365,945		1,347,078,298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0		6,410,214	
운 용 비 용		1,233,320		1,983,798
1. 운용수수료	292,509		470,348	
2. 판매수수료	880,447		1,413,529	
3. 수탁수수료	38,700		62,427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1,664		37,49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9,808,947		-2,629,91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78564582		-0.01909697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5.27 - 2013.05.26	1.4	1.3	1.4	1.6	1.1	1.2	1.6	2.0
2011.05.27 - 2012.05.26	-	-	3.3	3.0	1.9	1.7	1.4	1.3

펀드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종류 A	2012.05.27 - 2013.05.26	1.25	1.14	1.37	1.59	1.06	1.09	1.56	1.92
	2011.05.27 - 2012.05.26	0.00	0.00	3.12	2.84	1.87	1.68	1.25	1.14
종류 C1	2012.05.27 - 2013.05.2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종류 C-e	2012.05.27 - 2013.05.26	0.12	0.11	0.05	0.06	0.07	0.07	0.10	0.13
	2011.05.27 - 2012.05.26	0.00	0.00	0.15	0.14	0.02	0.02	0.12	0.1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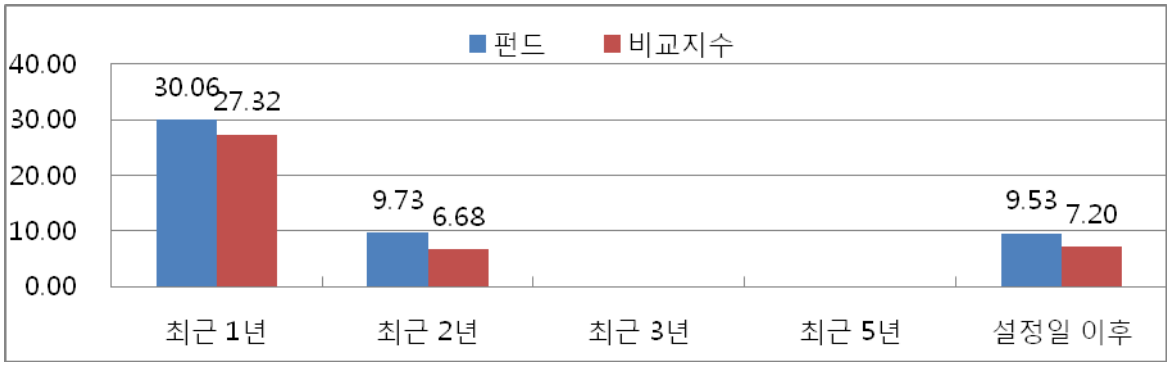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2.06.24 ~13.06.23	11.06.24 ~13.06.23			11.05.27 ~13.06.23
펀드	30.06	9.73			9.53
비교지수	27.32	6.68			7.20
종류 A	28.50	8.36			8.16
종류 C1					-34.16
종류 C-e	28.51	8.35			8.15

(주 1) 비교지수: CDAX 95% + 콜금리 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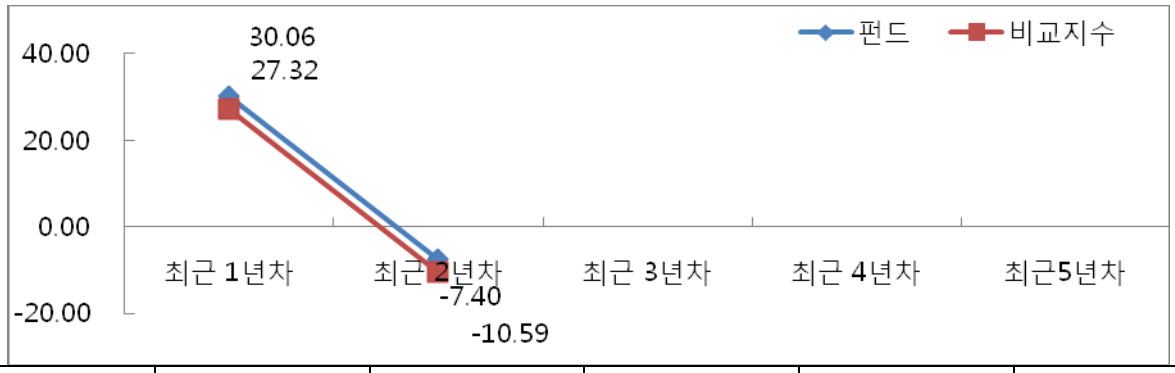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2.06.24 ~13.06.23	11.06.24 ~12.06.23	11.05.27 ~11.06.23		
펀드	30.06	-7.40			
비교지수	27.32	-10.59			
종류 A	28.50	-8.61			
종류 C1					
종류 C-e	28.51	-8.63			

(주 1) 비교지수: CDAX 95% + 콜금리 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특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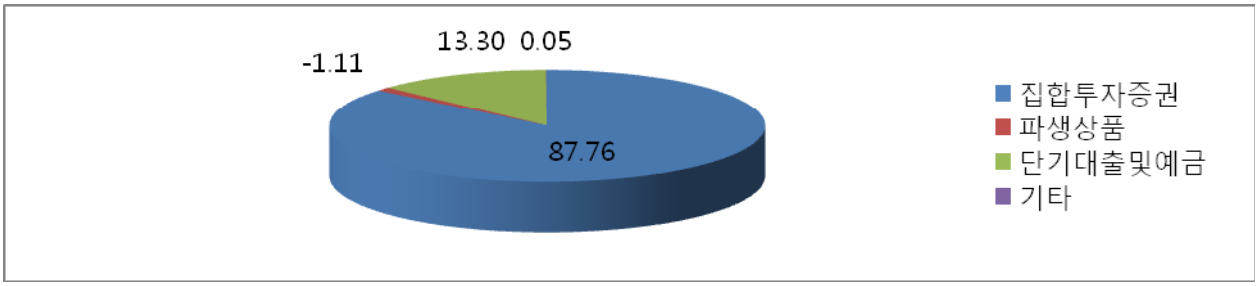

[2013.05.26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9.66)	(0.34)	(13.00)
EUR	0	0		2	0	0		0		0	0	2
	(0.00)	(0.00)	(0.00)	(101.28)	(0.00)	-(1.28)	(0.00)	(0.00)	(0.00)	(0.00)	(0.00)	(87.00)
합계	0	0	0	2	0	0	0	0	0	0	0	2
	(0.00)	(0.00)	(0.00)	(87.76)	(0.00)	-(1.11)	(0.00)	(0.00)	(0.00)	(13.30)	(0.05)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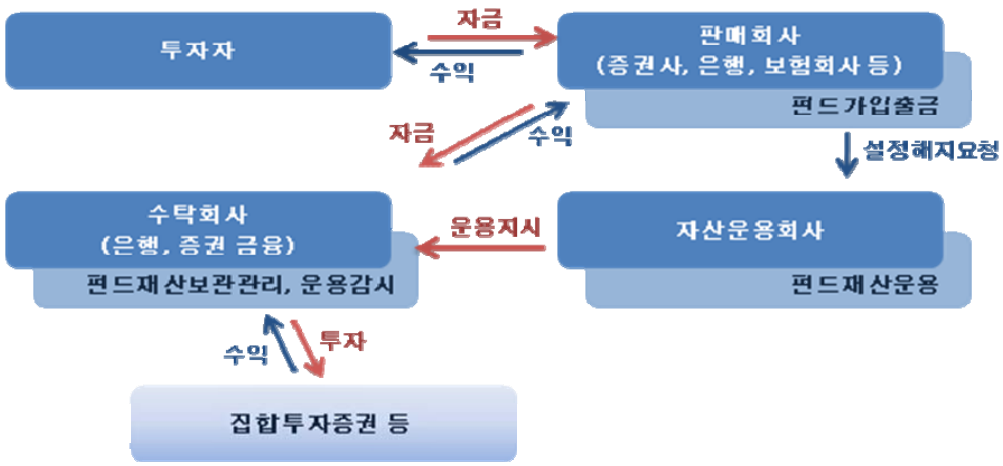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 영풍빌딩 19 층 02)724-7400

	홈페이지: www.dws-korea.com
회사연혁	2002 년 2 월 22 일 설립 2002 년 6 월 14 일 투자자문업 허가(등록일) 2002 년 6 월 14 일 투자일임업 허가(등록일) 2002 년 6 월 17 일 투자신탁운용업 허가(등록일) 2009 년 2 월 4 일 사명변경
자본금	19,410,825,000 (원)
주요주주현황	Deutsche Asset Management Group Limited (국적: 영국, 단독주주)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	2013.03.31	2012.03.31
현금및예치금	14,580	18,543
매도가능증권	505	505
유형자산	156	92
기타자산	3,263	5,276
자산총계	**18,504**	**24,416**
기타부채	6,349	7,106
부채총계	**6,349**	**7,106**
자본금	19,411	19,411
자본잉여금	1,678	1,678
이익잉여금	-8,934	-3,779
자본총계	**12,155**	**17,310**
부채및자본총계	**18,504**	**24,416**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012.04.01 ~2013.03.31	2011.04.01 ~2012.03.31
영업수익	10,073	14,430
영업비용	14,791	13,940
영업이익	**-4,718**	**490**
영업외수익	0	45
영업외비용	356	410
경상이익	**-5,074**	**126**
특별이익		
특별손실		
세전순이익	**-5,074**	**126**
법인세비용	81	82
당기순이익	**-5,155**	**44**

라. 운용자산 규모

[2013.06.23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307	94	163	0	1,814	0	0	3,575	0	0	0	6,95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전화번호	02-3455-2114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④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⑧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위탁)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①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②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③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연락처	02- 2168-0400
회사연혁	설립일: 2000 년 6 월 15 일
홈페이지	http://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icepni.com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따라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법 제190조 6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단, 법 193조에 따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ㄱ)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ㄴ)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 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 개월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2015.01.01)
  ① 수익자가「국가재정법」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관리 주체인경우 (제 13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수익자가 법 제 251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③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④ 투자신탁의 수익자총수가 1 인이 된 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금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의 내용을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합니다.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이 투자신탁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헤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내용을 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투자신탁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ws-korea.com),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 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 집합투자업자는 계열관계에 있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국내 연락책임자로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국내 등록, 유지 및 마케팅지원업무 등의 대가로 외국집합투자업자로부터 용역보수를 받습니다. 용역보수는 국내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된 금액(국내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금액 및 국내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금액 등을 포함)을 기준으로 계열관계에 있는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순운용보수의 50%까지로 계산됩니다. 단, 용역보수율은 계약변경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현재 미설정 펀드)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배점기준	평가요소
정보제공능력	50%	- 시장 및 업종별, 종목별 분석자료 제공 - 실시간 수급동향 제공 능력 - 각종 문의 시 적시 대응 능력 - 관련 세미나, 기업탐방, IR 등의 기회 제공 - 파생시장 분석자료 제공 - 현/선물 차익거래 분석정보 제공
매매체결능력	30%	- 호가의 정확성, 신속성, 적정성
결제이행능력	10%	- 결제 업무 상의 정확성 및 신속성 -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 결제 전반에 필요한 지식 보유 여부
중개수수료	10%	- 적정 수수료 책정 여부

2) 평가방법

- 매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 평가주체는 담당운용부에서 하되 연관부서 참여가능
- 채무증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매시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3) 약정배분기준

- 약정배분기준은 거래금액 및 거래 수량을 기준으로 정함

- 평가결과에 따라 복수의 증권사/은행 및 선물사 선정
    - 채무증권과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증권사/은행은 15-20 개사, 선물사는 4-10 개사 선정
    -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증권사/은행 4-10 개사, 선물사는 4~10 개사 선정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증권사 10 개사, 선물사는 4~10 개사 선정
- 상기 선정된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75%이상 배정함
- 특정회사 최대 배정가능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채무증권: 총 약정금액의 30%이내
    -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총 약정금액의 35% 이내
    -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총 약정금액의 35% 이내
    - 지분증권: 총 약정금액의 30%이내
    -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총 약정금액의 35% 이내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하신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DWS 독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